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규성(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신민수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5.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성매매 여성별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성매매 알선상황을 공유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코스별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이 성사되면 그 내용을 위 라인을 통해 알려주는 일명 '센터'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성매수남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일명 '기사'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5. 2. 1. 17:13경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28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18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별명 'T')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 28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 제2호 'F 스마트폰.z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물 일부 출력 - 라인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정금 산정의 근거: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일람표, 성매매 이익금 정리)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경모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알선일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성매매 대금(원)	영업 형태	성매매 여성
1	25. 2. 1. 17:13		280,000	출장	
2	25. 2. 1. 17:22		110,000	오피	
3	25. 2. 1. 19:35		170,000	오피	
4	25. 2. 1. 19:45		140,000	출장	
5	25. 2. 1. 22:32		100,000	출장	
6	25. 2. 1. 23:45		130,000	출장	
7	25. 2. 1. 23:59		110,000	오피	
8	25. 2. 2. 00:03		170,000	오피	
9	25. 2. 2. 00:46		150,000	오피	
10	25. 2. 2. 00:58		220,000	출장	
11	25. 2. 2. 02:10		250,000	출장	
12	25. 2. 2. 02:11		250,000	출장	
13	25. 2. 2. 03:14		100,000	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연번	알선일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성매매 대금(원)	영업 형태	성매매 여성
14	25. 2. 2. 04:38		170,000	오피	
15	25. 2. 2. 05:28		150,000	출장	
16	25. 2. 2. 06:23		190,000	출장	
17	25. 2. 2. 14:19		110,000	출장	
18	25. 2. 2. 15:00		120,000	출장	
19	25. 2. 2. 15:40		280,000	출장	
20	25. 2. 2. 16:38		100,000	출장	
21	25. 2. 2. 16:53		160,000	출장	
22	25. 2. 2. 20:05		100,000	출장	
23	25. 2. 2. 20:12		100,000	출장	
24	25. 2. 2. 21:01		90,000	오피	
25	25. 2. 2. 21:25		120,000	출장	
26	25. 2. 2. 21:37		200,000	오피	
27	25. 2. 2. 22:49		170,000	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연번	알선일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성매매 대금(원)	영업 형태	성매매 여성
28	25. 2. 2. 23:41		120,000	출장	
29	25. 2. 3. 00:00		100,000	출장	
30	25. 2. 3. 00:01		140,000	출장	
31	25. 2. 3. 03:12		170,000	오피	
32	25. 2. 3. 03:45		90,000	오피	
33	25. 2. 3. 14:22		80,000	오피	
34	25. 2. 3. 15:35		250,000	출장	
35	25. 2. 3. 16:56		100,000	출장	
36	25. 2. 3. 17:56		100,000	출장	
37	25. 2. 3. 18:06		110,000	오피	
38	25. 2. 3. 18:18		100,000	출장	
39	25. 2. 3. 20:02		260,000	출장	
40	25. 2. 3. 20:58		100,000	출장	
41	25. 2. 3. 21:52		90,000	오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9

연번	알선일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성매매 대금(원)	영업 형태	성매매 여성
42	25. 2. 3. 22:44		190,000	오피	
43	25. 2. 3. 23:22		130,000	오피	
44	25. 2. 4. 00:37		110,000	오피	
45	25. 2. 4. 00:42		220,000	출장	
46	25. 2. 4. 01:08		100,000	출장	
47	25. 2. 4. 04:21		100,000 (미지급)	출장	